현행	변경
Ⅱ.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·운영 **1. 교육기관 설치** **마. 현장실습기관** **1) 실습연계가능기관** 재가실습시간은 시·도 판단 하에 방문요양 및 주·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절히 안배 가능. 다만, 실습시간을 모두 방문요양 또는 주·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어느 한 곳에만 배분하는 것은 불가함	**Ⅱ.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·운영** **1. 교육기관 설치** **마. 현장실습기관** **1) 실습연계가능기관** 재가실습시간은 시·도 판단 하에 방문요양 및 주·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절히 안배 가능(단서 삭제)
Ⅱ.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·운영 **1. 교육기관 운영** **라. 교육과정 수료** **1) 수료기준** 이론, 실기, 실습 각각 8할 이상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시간의 8할 이상만 이수한 경우 정상수료로 불인정 ※ 8할을 초과하더라도 교육생의 상당부분이 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10할 미만으로 이수한 경우 교육과정을 단축 실시한 것으로 간주	**Ⅱ.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·운영** **1. 교육기관 운영** **라. 교육과정 수료** **1) 수료기준** 이론, 실기, 실습 각각 8할 이상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시간의 8할 이상만 이수한 경우 정상수료로 불인정. 단, 실습은 8할만 이수하여도 정상수료로 인정 ※ 8할을 초과하더라도 교육생의 상당부분이 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10할 미만으로 이수한 경우 교육과정을 단축 실시한 것으로 간주. 단 실습은 8할만 이수하여도 정상수료로 인정